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112501     |
| 의 퇴 인 | 고민정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1. 8. 9. |

##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### □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(안 제15조의5제4항)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·열람 실태 및 그 영상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·점검하여야 함

[표 1]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조사·점검 대상 및 방지목적

|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상   | ·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 및 열람 실태 | ·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·열람 실태 및 그 <u>영상정보</u> |
| 방지목적 | ·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          | · (좌동)<br>· <u>아동학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미첨부 근거규정

### 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## III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영상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조사·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보건복지부는 현재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·관리·열람 실태에 대하여 매년 조사·점검을 실시하고 있음
  - －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어린이집의 약 10%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며, 일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점검을 병행하고 있음
  - － 점검 내용은 폐쇄회로 설치기준 의무이행, 내부관리계획 수립, 영상정보 대장관리, 안전성 확보조치 등이며, 영상모니터링 시 ‘표본 영상정보확인’(sampling check)을 통하여 아동학대 징후 및 사고위험성, 급식안전 등을 점검하고 있음
  - －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영상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조사·점검할 경우 현행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2] 표본 영상정보확인 실시 현황: 2016~2021년

(단위: 개소, 건)

|                | 2016년<br>하반기 | 2017년<br>상반기 | 2017년<br>하반기 | 2018년<br>상반기 | 2021년<br>상반기*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어린이집 수         | 3,247        | 4,654        | 11,204       | 4,585        | 450           |
| 아동학대 발견 건수     | 1            | 0            | 3            | 0            | 1             |
| 복지부 직접 점검 대상 수 | 4            | 4            | 4            | 4            | 20            |

주: 2021년은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중 개인위탁 중인 어린이집 450개소를 대상으로 함  
자료: 보건복지부

□ 다만, 현행 사업의 확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매년 어린이집에서 녹화되는 영상정보의 분량, 녹화된 영상정보를 조사·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

$$\text{추가재정소요액} = \sum_{t=2022}^{2026} [\text{확대 추진할 사업 비용}_t - \text{현행 사업 비용}_t]$$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---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사회비용추계과             |
| 과장      | 이진우                 |
| 추계세제분석관 | 이윤경                 |
| 연락처     | 02-6788-4742        |
|         | yoonklee@nabo.go.kr |

---